



준법경영 내부심사 계획 및 실전규정

2023. 6. 10

주식회사 코스탯아이앤씨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임직원이 회사의 준법경영 현장 및 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구체적인 행동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국제표준 및 협력사(고객)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데 있으며 지속적인 준법, 노동, 준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 삼성 협력사의 제3자 검증에 의한 준법사항 RBA심사 요구사항 및 자가 개선

- 국내협력사 및 해외협력사의 자가점검 요구 증가
-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내부시스템을 수립하여 준법사항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주기적 점검을 통하여 사회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함

□ 용어 정의

- 준법/노동/윤리에 대하여 준법경영으로 통일

□ 준법경영

단계추진경과

< 1단계 >
준법영영체계 수립

- 준법/노동/윤리 조직 정비
- 준법/노동/윤리 정책 구축
- 준법경영선언

< 2단계 >
신고구제절차 제공

- 구제절차 규정화
- 구제절차 시행

< 3단계 >
준법영향평가 실시

- 준법영향평가 계획 수립
- 준법영향평가 실시
- 평가 및 결과보고

< 4단계 >
준영향평가 결과

- 준법영향평가 조치이행 계획수립
- 준법경영 성과평가(환류)

□ 추진경과

시 기	내 용	비 고
2023.6	준법경영 실행 계획수립	공표
	준법경영 전담부서 및 담당자 지정	
	준법경영지침 제정	
2023. 8.	준법경영 가이드라인 수립	
	경영활동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준법실태 파악	
	준법영향평가 체크리스트(32개 지표) 작성	
	준법경영위원회 구성	
	부서별 준법경영담당 지정	
2023. 9	준법영향평가 실시	
	준법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작성	
2023.10	노동/준법/윤리 준법영향평가 실시	
2023.10	준법영향평가 결과보고	
2023. 10	'22- 23년 준법경영 이행계획 수립	
2023.11.	준법경영 Working Group 및 사업계획	

II

단계별 주요 추진활동

준법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준법경영 비전과 의지를 대내외 공표하기 위해 준법경영 담당부서 지정, 준법경영 이행지침 제정, 준법경영위원회 구성, 준법경영 현장 공표 및 준법 교육(기 실시함)

1단계

준법경영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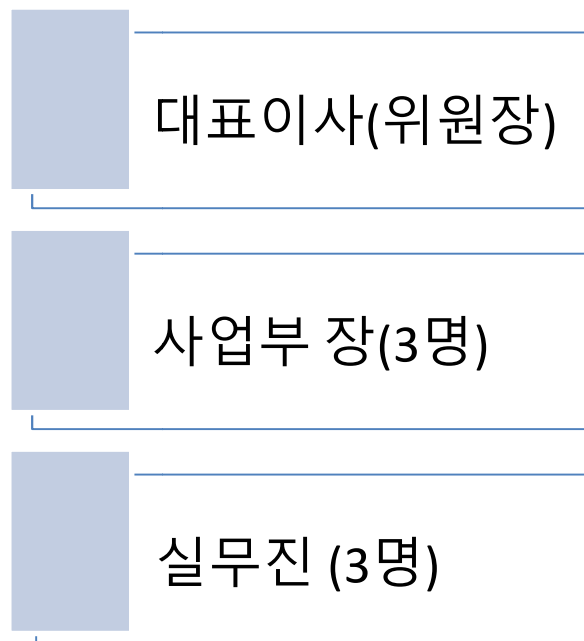
□ 준법경영 담당부서 지정 · 운영

- 실효성 있는 준법경영 추진을 위하여 기존 노동 · 윤리경영 담당부서인 인사부를 준법 경영 전담부서로 지정

구 분	내 용
전담부서 (인사부)	- 준법경영 업무 총괄 - 준법경영 활동 추진, 내 · 외부협의체 구성(가능 시: 협력업체 영세)
준법경영 Working Group	- 사업장별 준법경영 담당자 1명 지정, 총5명 으로 구성 - 준법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작성, 준법경영 관련 개선활동 및 성과 등

□ 준법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목적) 이해관계자의 준법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심의 · 의결
- (구성) 위원장 1명,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
- (기능) 준법경영 기본계획 수립, 준법개선 권고, 준법침해 접수사건 구제 조치, 준법 보호 및 증진 활동



□ 준법경영 운영지침 제정

- (목적)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준법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준법경영의 목적 및 체계, 준법경영위원회, 준법영향평가, 구제절차 등 준법경영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준법경영 운영지침 주요사항, 준법침해 구제절차

총칙 및 이행사항	준법경영 목적, 정의, 적용범위, 이행사항
준법경영 체계	준법경영 선언, 이행계획수립, 준법 교육, 준법활동지원
준법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준법영향평가 실시
준법침해 구제	준법침해 구제절차, 신고인의 신분보장,
준법침해 신고	준법침해 신고 접수, 처리절차, 시정과 징계

□ 준법경영헌장 제정 · 개정 및 공표

- (제정) 준법경영 정책에 따라 23년 6월 1일 제정 공표
- (내용) 준법기준과 경영활동에서의 준법준중, 환경법규 준수 등 실천항목으로 구성

□ 준법경영 자가진단 (내부심사)

- 준법경영 정책에 따라 매년 1회 자가 진단을 실시.
- 자가 진단시 개선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
-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하여 심사 진단표에 반영.
- 필요시 제3자에 의한 자가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준법경영 헌장

준법경영 다짐

주식회사 코스탯아이앤씨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정착하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고객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나아가 준법에 근거한 경영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사회에 공헌하는 모범 기업으로 성장함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준법경영을 발표하고, 실천할 것임을 다짐한다.

- 우리는 준법경영을 경영 판단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며, 고객 존중의 자세로 최고의 기술, 서비스 그리고 품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감동을 실천한다.
- 우리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의 도덕적 가치를 존중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정착하여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을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상호 존중하고,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 하며 인재 육성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한다.
- 우리는 임직원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며, 나아가 지역 사회의 환경 보호를 위하여 앞장 선다.
- 우리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 활동으로 건실한 이익을 실현,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

2023.06.01

□ 준법 교육

- (운영방법) 임·직원 대상 준법교육을 필수 교육으로 지정)하고 정기적 교육 실시(연1회)
- (교육실적 및 계획)
 - 준법감수성 향상을 통한 준법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존중문화를 위한 새로운 시선, 준법”을 주제로 전직원 집체교육('23. 6.)
 - 준법경영에 대한 전사적 공감대 형성 및 이해력 증진을 위해 “공정사회 및 준법 사회 구현”을 주제로 사이버교육 실시 계획 (주요 담당자 부분별 실시)

2단계

준법구제절차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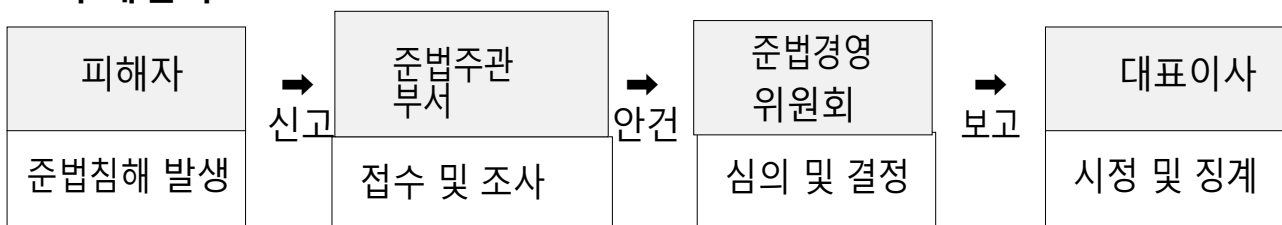
인권 등이 침해당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 조사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구제절차 수립 및 운영

□ 구제절차 수립 및 운영 (대내· 외)

- (수립) 고용차별, 사생활 침해 등 준법침해행위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준법경영 주관 부서인 비서실에서 운영
- 「준법침해구제절차 세부지침 명문화」
- (운영) 「준법침해 구제절차 세부지침」에 따라 신고 접수 및 구제시행(연중)
 - 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신고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전화· 메일, 대면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신고채널을 제공하여 접근성 제고(홈페이지 등)

* 현재까지 신고건수 : 0건 / 지속적 모니터링

□ 구제절차



3단계

준법영향평가 실시 (대분류 / 세부지침)

회사운영 및 주요사업 추진과정 또는 결과에서 이해관계자 및 구성원의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 잠재적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마련,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개선방안 도출

□ 준법평가 체크리스트 마련(대분류)

분야	항목 설명	네	보안 필요	아니요	해당 없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1. 회사는 인권중심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정책선언을 했다.				
	2. 회사는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3. 회사는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4. 회사는 인권경영 성과를 추적하고 기록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5. 회사는 인권경영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6. 회사는 활동으로 인해 인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제 절차를 제공한다.				
2 고용상의 비차별	1. 회사는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2. 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3. 회사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하지 않는다.				
	4.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인 처우를 하지 않는다.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 회사는 근로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인정한다.				
	2. 회사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3. 회사는 근로자 대표에게 대표로서의 활동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4. 회사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회사는 직원들이 독립적으로 노동관련 문제를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조치를 취한다.				
4 강제노동의 금지	1. 회사는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2. 회사는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를 포함하여, 직원들의 신분증명서, 여행문서 등 다른 중요한 개인문서를 보관하지 않는다.				
	3. 회사는 외국에서 활동하는 자회사나 협력회사에서 강제노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5 아동노동 금지	1. 회사는 15 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2. 연소자를 고용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고용을 중지시키키보다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다른 구제조치를 취한다.				
	3. 18 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는 경우 건강이나 안전, 도덕의식에 해로운 일을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				
6 산업안전의 보장	1. 회사는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하도록 유지한다.				
	2.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 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3.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장비를 제고양며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4.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5.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한다.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1. 회사는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가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이행을 요구한다.				
	2. 회사는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가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모니터일한다.				
	3. 회사는 보안담당 직우너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 준법영향평가 실시 결과 도출

- 2023년
 - 평가기간: 23. 10.01. ~ 23. 10. 15.
 - 평가방법 : 준법경영 체크리스트를 담당부서에서 작성하여 자체평가 후 준법경영위원회에서 심의
 - 평가내용 : 운영 7개분야 31개 지표
 - 평가결과
 - 운영지표
 - ▷ 28개 지표 중 긍정평가 19, 보안필요 5개, 해당없음 4개

분야	총계	답변 결과			
		예	보안 필요	아니요	해당 없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6	5	1		
2. 고용상의 비차별	4	4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4	2	1		1
4. 강제노동의 금지	3	2	1		
5. 아동노동 금지	3	1			2
6. 산업안전의 보장	5	3	1		1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3	2	1		

- 세부지표

▷ 32개 세부지표 중 긍정평가 25, 보안필요 4개, 해당없음 2개

분야	총계	답변 결과			
		예	보안필요	아니요	해당없음
개요	2	2			
정직 및 반부패	7	6	1		
정보 공개	1		1		
지적재산 보호	1	1			
개인정보 보호	2	1	1		
품질안전 관리	1	1			
인권책임 경영	2	2			
자발적 근로	2	2			
근로 시간	4	2	2		
임금 및 복리후생	3	3			
아동 근로자	2				2
인도적 대우	3	3			
다양성	1	1			
사회공헌	1	1			

□ 준법영향평가 결과 개선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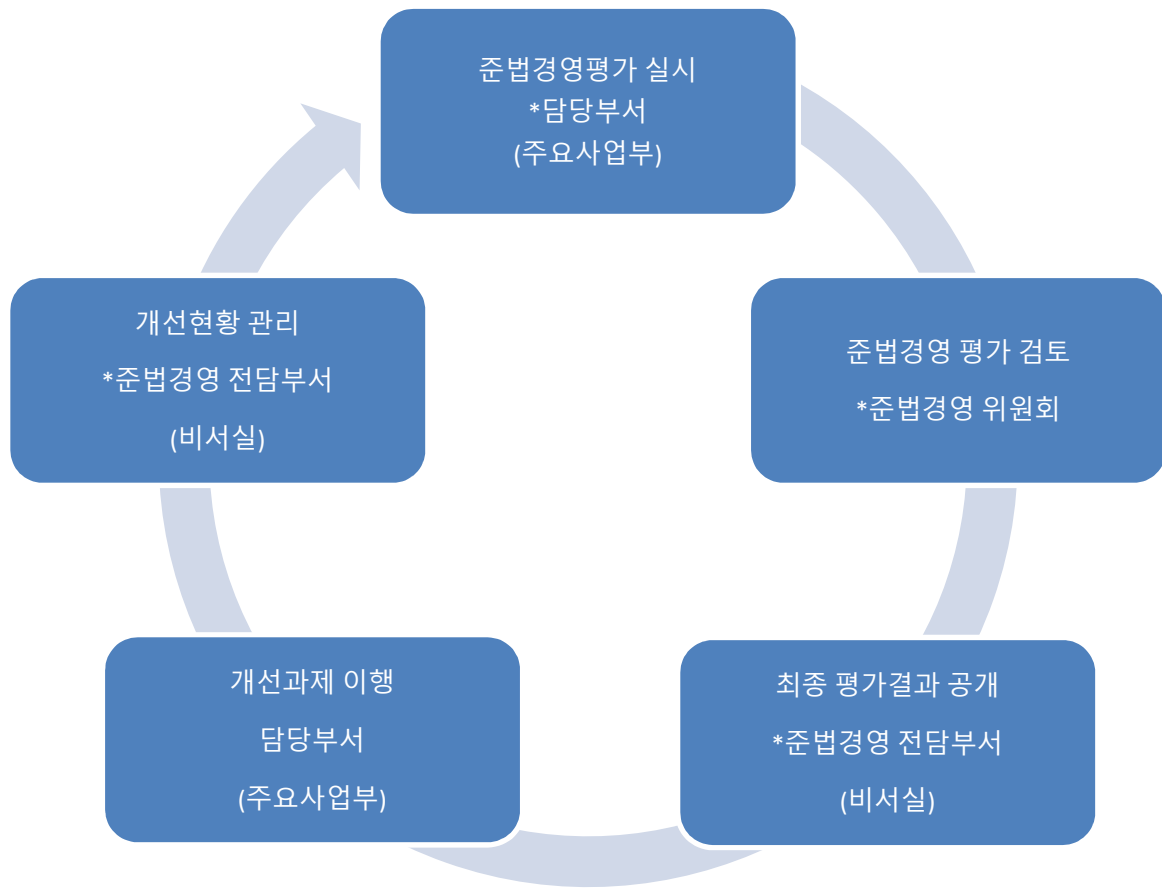
- 준법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지표 중 부정적으로 평가된 지표(“보완필요”, “아니오”)에 대하여 개선방안 마련 및 개선 추진 中

4단계

준법영향평가 이행/개선 계획

- 준법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개선방안을 기관운영과 주요사업에 반영하고, 체계적 준법경영 실행을 위해 준법경영 이행계획 수립, 준법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공개
- 결과보고의 개선방법에 대한 이행은 각 사업장 실무자의 책임하에 철저히 모니터링 후 준법경영 평가 시 반영

□ 준법영향평가 지속 개선 체계



□ 2023년 준법영향평가 개선방안 이행계획

-운영지표 및 세부지표 보완사항

분야	개선과제	이행현황 및 계획	비고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괴로힘등 고충처리함 이용 익명 제보 대체 -공개된 신고체계 구축	-홈페이지 비공개 신고 구축 중 -전직원 신고방법 등 고지	
직원들이 독립적으로 노동관련문제를 토론할 수 있게 조치	-정기적 노사협의회 외 자유로운 대화 유도 -노사협의 위원 외 관심 사원 참여 유도 (협의 주제 및 건의사항)	-노사협의 개최 1개월 전 게시판 관련 내용 고지 (참여 유도) -노사협의 대화 및 근로자간 회의 요청시 관련 근무시간 인정	
업무상 부상 및 질병시 필요한 요양비 등 지급	-업무상 부상 없도록 관련 교육 철저 -건강검진 빠짐 없이 실시 -복리후생 규정 점검	-현장 중심 안전 점검 매월 실시 -장기적으로 요양비에 대하여 검토(작은부분부터 점검 후 실시)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의무 이행 요구	-체크리스트 진단표 작성 -업체 선정 후 자가진단 실시	-진단표 구성 중 -진단 후 지속적 서약서 등 징구로 인신 개선 -애로사항 청취 (해결 방안 모색)	
임직원, 이해관계자 비위 신고채널 보유	-홈페이지 국문본 없음 -게시판 작성 권한 없고 공지 사항 위주	-홈페이지 국문본 실설 (2023년) -홈페이지에 신고채널 신규 신설	전면 재검토

협력사의 경제,사회,환경적 성과의 보고시스템 구축확인	-협력사 커뮤니케이션 채널 전무	-대중소기업협의체 활성화 -형식적 보고용 탈피/대화채널활용	
협력사,임직원등 개인정보 보호 절차 시스템 구축	-협력사, 고객사 등 외부 개인정보보호절차 미흡 / 현 개인정보보호 내부만 적용 중	-개인정보보호 절차 규정 신설 중 (2023년 1분기까지 완료)	
주당근로시간 60시간 초과 및 관리시스템 운영확인	-연장근로 및 주1회 휴무 철저한 관리 -연장근로시 부서공유 관련 승인 후 진행	-노동법규 재 점검 -영업/생산/자재 정기적 재고 진행 -긴급 물량 통제 시스템 운영	

□ 준법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및 공개

- (준법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2022년 준법경영 심사에 따라 내부점검 후
준법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 준법경영 체제, 준법영향평가, 개선사항 등에 대한 객관적 · 일관적 추진 활동
및 계획 포함
- (준법영향평가 보고서 공개) 사내 게시판을 통해 준법영향 내부평가 보고서
공개(2022년 11월)

□ 모니터링 준법평가 체크리스트 (2024. 10.21)

분야	항목 설명	네	보안 필요	아니요	해당 없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1. 회사는 인권중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정책선언을 했다.	■			
	2. 회사는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			
	3. 회사는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			
	4. 회사는 인권경영 성과를 추적하고 기록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			
	5. 회사는 인권경영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6. 회사는 활동으로 인해 인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제 절차를 제공한다.	■			
2 고용상의 비차별	1. 회사는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2. 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할때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			
	3. 회사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하지 않는다.	■			
	4.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인 처우를 하지 않는다.	■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 회사는 근로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인정한다.	■			
	2. 회사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3. 회사는 근로자 대표에게 대표로서의 활동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4. 회사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회사는 직원들이 독립적으로 노동관련 문제를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조치를 취한다.	■			
4 강제노동의 금지	1. 회사는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			
	2. 회사는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를 포함하여, 직원들의 신분증명서, 여행문서 등 다른 중요한 개인문서를 보관하지 않는다.	■			
	3. 회사는 외국에서 활동하는 자회사나 협력회사에서 강제노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			
5 아동노동 금지	1. 회사는 15 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2. 연소자를 고용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고용을 중지시키키보다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다른 구제조치를 취한다.	■			
	3. 18 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는 경우 건강이나 안전, 도덕의식에 해로운 일을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	■			
6 산업안전의 보장	1. 회사는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하도록 유지한다.		■		
	2.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 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			
	3.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장비를 제공하며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4.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5.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한다.	■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1. 회사는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가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이행을 요구한다.		■		
	2. 회사는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모니터일한다.		■		
	3. 회사는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			

□ 2025년 준법영향평가 개선방안 이행계획

-운영지표 및 세부지표 보완사항

분야	개선과제	이행현황 및 계획	비고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괴로힘등 고충처리함 이용 익명 제보 대체 -공개된 신고체계 구축	-홈페이지 비공개 신고 구축 중 (2025. 6월까지 완료)	개선중
직원들이 독립적으로 노동관련문제를 토론할 수 있게 조치	-정기적 노사협의회 외 자유로운 대화 유도 -노사협의 위원 외 관심 사원 참여 유도 (협의 주제 및 건의사항)	-노사협의 개최 1개월 전 게시판 관련 내용 고지 (참여 유도) -노사협의 대화 및 근로자간 회의 요청시 관련 근무시간 인정	이행
업무상 부상 및 질병시 필요한 요양비 등 지급	-업무상 부상 없도록 관련 교육 철저 -건강검진 빠짐 없이 실시 -복리후생 규정 점검	-현장 중심 안전 점검 매월 실시 -장기적으로 요양비에 대하여 검토(작은부분부터 점검 후 실시)	이행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의무 이행 요구	-체크리스트 진단표 작성 -업체 선정 후 자가진단 실시	-진단표 구성 중 -진단 후 지속적 서약서 등 징구로 인신 개선 -애로사항 청취 (해결 방안 모색)	개선중
임직원, 이해관계자 비위 신고채널 보유	-홈페이지 국문본 없음 -게시판 작성 권한 없고 공지 사항 위주	-홈페이지 국문본 실설 (2023년) -홈페이지에 신고채널 신규 신설	개선중
협력사의 경제, 사회, 환경적 성과의 보고시스템 구축확인	-협력사 커뮤니케이션 채널 전무	-대중소기업협의체 활성화 -형식적 보고용 탈피/대화채널활용	재검토
협력사, 임직원등 개인정보 보호 절차 시스템 구축	-협력사, 고객사 등 외부 개인정보보호절차 미흡 / 현 개인정보보호 내부만 적용 중	-개인정보보호 절차 규정 신설 중 (2023년 1분기까지 완료)	이행
주당근로시간 52시간 초과 및 관리시스템 운영확인	-연장근로 및 주1회 휴무 철저한 관리 -연장근로시 부서공유 관련 승인 후 진행	-노동법규 재 점검 -영업/생산/자재 정기적 재고 진행 -긴급 물량 통제 시스템 운영	개선중